

사택관리 규정

- 제정 : 1999. 10. 1.
- 개정 : 2000. 3. 1.
- 개정 : 2019. 6. 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소유 사택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자격) 사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초빙교수와 무주택 신임교원 및 기타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관리라 함은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영을 뜻한다.

② 이 규정에서 교원이라 함은 사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전조의 입주자격을 가진 교원을 말한다.

제4조(관리) 사택은 총무처 관리과에서 관리한다.

제 2 장 입주 및 퇴거

제5조(입주) 사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 서식 제1호>의 사택입주원을 총무처 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가족의 제한) 입주가족은 교원인 세대주가 부양할 의무를 지고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

제7조(입주허가) ① 총무과의 장은 본 규정에 따른 자격,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를 허가한다.

② 사택입주원을 제출한 교원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초빙교수
2. 무주택 신임교원
3. 기타

제8조(구비서류) 입주가 허가된 자는 <별지 서식 제2호>의 각서와 비품 인수증 및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 입주가족 명부를 즉시 총무처 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간 만료 1개월전에 총장의 승인

4-2-15 사택관리 규정

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퇴거) ① 사택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택을 1개월 이내에 명도하여야 한다.

1. 퇴직하였을 때
2. 본교 계획에 의하여 퇴거 요청을 받았을 때
3. 입주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퇴거 통보를 받았을 때
4.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을 때

② 입주허가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에 당일 퇴거하여야 한다.

제 3 장 입주자의 의무

제11조(입주자의 의무) 사택에 입주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준수
2. 학교의 허가 없이 사택의 용도변경, 내부구조의 변경 또는 부지에 시설물 설치 불가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의 시설물, 비품, 기타 수목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4. 사택, 시설물, 비품 등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 불가
5. 사택의 내부구조는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허가를 받아 개·보수할 경우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정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